##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35

발의연월일: 2020. 8. 10.

발 의 자 : 민홍철 · 김진표 · 이용선

안규백 • 박재호 • 임종성

이개호 · 신정훈 · 정성호

윤관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을 각급부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으나, 인력 제한 및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 주택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권역별 위탁관리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음.

하지만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부대별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권역별 위탁관리 확대가 제한되므로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

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)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 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법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
- 3.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
-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위탁)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	현 행	개 정 안
3.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		제9조의2(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)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등록한 자원 3.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업을 등록한 자기관리업을 등록한 자기관리업을 등록한 자기관리업을 구성하는 요건을 갖춘 자 에 제한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및 시설을 갖춘 자기관의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